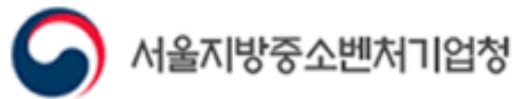


2022년 공공구매제도 유의사항 안내





목 차

- 1 2022년 공공구매제도 변경사항**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변경
 - 기술개발제품 대상인증 변경
- 2 공공구매제도 주요 위반사례**
 -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 중소기업제품 등 구매목표비율제도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변경

공공기관이 중기간 경쟁제품(213개)을 구매할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에게서 구매하여야 함

- **제품지정**: 중기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3년마다 지정(금번 지정된 632개 세부품목은 '22년~'25년 적용)
- **입찰**: 공공기관의 중기간 경쟁제품 입찰시에는 **직접생산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
- **직접생산**: 중소기업중앙회 및 관련 협동조합의 실사를 거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 **공사용자재**: 경쟁제품 중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일정규모 이상 공사(종합공사 40억, 전문공사 3억) 발주시 공공기관이 **물품으로 분리하여 발주**(관급자재로 공급)

신규지정(51개)

- **정보통신기술 관련 품목(8개)**
원격자동검침시스템, 무인교통감시장치, 바닥형보행 신호등, 교통관제시스템, 교육용 로봇 등
- **코로나19 관련 품목(3개)**
화학물질보호복, 비말차단마스크, 보건용마스크
- **특별고용지원업종(5개)**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통학운송서비스, 기타도로 여객운송서비스,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 등
- **가구(5개)**
스툴의자, 실습대, 교탁, 칠판보조장, 약품장

지정제외(33개)

- **건자재**
덱플레이트, 가설방음판
- **의류 및 가방**
남성용스웨터, 지갑, 서류가방, 손가방, 소지품케이스
- **가구**
산업용작업대, 이동식스툴테이블, 시약보관대
- **조명**
고압나트륨램프, 주철가로등주, 수중조명등
- **기타**
항온항습기, 화장로, 연관보일러, 수중인라인펌프 등

2. 기술개발제품 대상인증 변경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13종)을 공공기관이 의무 구매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 고취와 판로개척 지원

- **관련근거**: 판로지원법 제13조
- **의무구매율**: 공공기관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를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
- **대상제품군 조정**: 기존 18종 인증을 13종으로 우선구매 대상 인증 축소
- **우선구매요청**: 기업 요청시 지방중기청에서 공공기관에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요청할 수 있음(구매협조 요청 공문 발송)
- **우선구매지원**: 요청 받은 공공기관에서는 60일 이내에 구매 여부 등 조치 결과를 지방중기청에 회신

대상인증(13종)

- **신규지정(1종)**
재난안전제품인증
- **유지(11종)**
성능인증, NEP(신제품인증), NET(신기술인증), GS인증, 우수조달공동상표, 우수조달물품지정, 물산업 우수제품 등 지정, 혁신제품, 녹색기술제품,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산업융합품목
- **통합(3종→1종)**
구매조건부신기술개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성과공유기술개발 →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
- **일몰(4종)**
우수산업디자인(GD), ICT융합품질인증,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공공기관 개발선택품
- ✓ 해당 4종은 '21.12.31 기준으로 인증기간이 유효할 경우 인증기간 종료일까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지원

1.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주요 위반사항

공공기관은 공공구매지원관리자를 지정하여
제품 발주계획, 구매실적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적절성 검토

- **관련근거**: 판로지원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6조
-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공공기관에서는 회계 또는 중소기업업무 관련자를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 지정
-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운영**: 지정된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역할은 **아래의 역할을 수행**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른 **계약 및 발주의 적절성 검토**
 2.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여부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조치의 **이행 여부 조사**
 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예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적절성 검토**

주요 위반사례

- **공공구매지원관리자 미지정**
공공구매지원관리자를 지정하였다고는 하나, 내부적으로 발령내지 않거나 업무분장에 미반영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적절성 검토 미흡**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중기간 경쟁제도 예외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적절성 검토를 이행하여야 하나, 미이행한 경우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주요 위반사항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구매

- **관련근거**: 판로지원법 제7조 및 제9조
- **중기간 경쟁제품 입찰시**: 구매 금액에 상관없이 중기간 경쟁제품을 입찰하여 구매시 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또는 지명경쟁)을 통해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중기간 경쟁제품 수의계약시**: 아래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와 계약하여야 함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
 3.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인 또는 단체와 수의계약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 다목, 라목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

주요 위반사례

- **입찰시 중기간경쟁제도 미이행**
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제도와 혼동하여 중소기업자가 아닌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만 제한하는 경우 계약기업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또는 지명경쟁)을 통해 조달계약하지 않은 경우
✓ 직접생산여부 확인은 기업이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통해 갈음할 수 있음(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조회 가능)
- **중기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이 아닌 일반경쟁으로 진행**
구매하는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지 인지하지 못해 일반경쟁으로 진행한 경우
- **중기간 경쟁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수의계약에서의 중기간 경쟁제도 존재를 인지하지 못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

3.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주요 위반사항

공공기관이 기재부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비경쟁제품을 조달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계약 체결

- **관련근거**: 판로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려는 경우**: 구매 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함
 1.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
 2.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고시금액(현재는 2억1천만원) 미만: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3. 고시금액(현재는 2억1천만원) 이상: 제한 없음

중기간 비경쟁제품

추정가격 1억원 미만(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추정가격 1억~2.1억원 미만(중소기업자 제한)

중기간 경쟁제품

금액에 상관없이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제한

주요 위반사례

- **제한경쟁 미이행**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비경쟁제품에 대한 공공구매제도 인지 미흡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경우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이나 중소기업자로 제한경쟁을 진행한 경우
- **계약시 중소기업 여부 및 기업 규모 미확인**
계약 기업의 중소기업 확인서에 기재된 기업 규모(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미확인
- ✓ 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조회할 수 있음

4.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주요 위반사항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 공사의 4천만원 이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공공기관에서 직접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제공

- **관련근거**: 판로지원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대상공사**: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40억원 이상의 종합공사, 3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공사에 포함되는 직접구매 대상 공사용자재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공공기관에서 분리발주를 통해 직접 구매하여야 함

주요 위반사례

- **직접구매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분리발주 미이행**
공사 부분의 공공구매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통합발주하여 직접구매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지방중기청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 협의를 거치지 않고 분리발주 미이행**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2조의2에 따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방중기청과 협의하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직접 구매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해당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구매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구매목표비율제도 주요 위반사례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구매

- **관련근거**: 판로지원법 제5조 및 제13조, 여성기업법 제9조, 장애인기업법 제9조의2, 창업기업법 제5조의2
- **중소기업제품**: 총 구매액의 **50%** 이상
-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5%** 이상
- **여성기업제품**: 물품·용역은 각각 총 구매액의 **5%** 이상, 공사는 공사 총 구매액의 **3%** 이상
- **장애인기업제품**: 총 구매액의 **1%** 이상(중증장애인생산품은 장애인기업제품에 포함 안 됨)
- **창업기업제품**: 총 구매액의 **8%** 이상

주요 위반사례

-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기술개발제품의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기술개발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찾기 어렵거나, 구매 특성상 매년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 **계약시 개별 확인서 확인 미흡**
계약 기업의 인증 획득 또는 유효기간 만료 여부 미확인으로 구매실적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 ✓ 기업의 각 개별 확인서 또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조회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물품·용역 : 김주아주무관(02-2110-6342)
공 사 : 최주영주무관(02-2110-6324)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